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시대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승강기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유·도선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업무 수행을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실의 공공데이터국을 공공지능데이터국으로 개편하며,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정보통신체계 총괄이라는 소관 기능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국(局) 단위 기구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재난안전정보통신국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청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관·역사기록관·행정기록관의 명칭을 방문객 입장에서 기록관의 위치가 쉽게 연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분원·부산분원·대전분원으로 각각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명칭을 기관의 대표 기능이 명확·간결하게 표현 되도록 하기 위

하여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소방위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의 명칭을 제주분원으로 변경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원 4명(5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행정안전부의 인력 3명(6급 3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데이터국장”을 “공공지능데이터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디지털보안정책과”를 “디지털보안정책과·지역디지털협력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0.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재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7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
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조정

⑧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
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⑨ 정부혁신국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
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
한다.
- ⑩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평가
 9. 정부혁신 관련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⑪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

항

23.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24.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2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⑫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⑬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15.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17.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18.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19.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0.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21.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
22.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24.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25.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26.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27.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28.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29.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 ⑭ 공공지능데이터국에 지능데이터정책과·지능데이터분석과 및 공공데이터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⑮ 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7.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⑯ 지능데이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2.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⑪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⑫ 공공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공공서비스통합과 및 행정정보공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⑬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4.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4.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5.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6.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홍보
17.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9.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㉔ 공공서비스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8.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9.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
 10.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안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공공서비스의 개인형 콘텐츠 연계 제공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㉕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6.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7.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1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6.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17.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18.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19.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20.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1.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2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
24.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25.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26.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27.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28.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
2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0.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7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을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2호 중 “실·국·센터·관”을 “실·국·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

안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재난안전정보센터”를 “재난 안전정보통신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15호 중 “센터”를 “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재난경감과”를 “기후재난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기후 재난대응과”를 “재난경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재난대응과장”을 “기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풍수해·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땅밀림 및 해안침식에 관한 사항은 포함한다.”를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에 따른 자연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후재난”을 “낙뢰·가뭄·폭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제20조제7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6호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각각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록물 분류·평가·폐기 정책의 수립·총괄·시행

5의2.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15의2.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폐기

제26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폐기

제26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폐기

제26조제6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폐기

제27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나라기록관)”을 “(성남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라기록관장”을 각각 “성남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나라기록관”을 “성남분원”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역사기록관)”을 “(부산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기록관장”을 각각 “부산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역사기록관”을 “부산분원”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행정기록관)”을 “(대전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기록관장”을 각각 “대전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행정기록관”을 “대전분원”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

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출장소를”을 “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장소에 소장”을 “분원에 소장 및 분원장”으로, “제주출장소장”을 “제주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장소장”을 “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장소”를 “분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7급 1명)”을 “1명(7급 1명), 정부혁신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시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재난안전정보센터:”를 “재난안전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경감과”를 “기후재난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후재난대응과”를 “재난경감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출장소”를 “분원”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제주출장소”를 “제주분원”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출장소”를 “분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출장소의”를 “분원의”로, “출장소가 관할하는”을 “분원이 관할하는”으로, “출장소가 처리하게”를 “분원이 처리하게”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47”을 “1,643”로, 일반직 계 “1,605”를 “1,600”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을 “9”로, 행정사무관 “118”을 “117”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6”을 “55”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을 “30”으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9”를 “42”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8”을 “167”로, 전산사무관 “30”을 “29”로, 행정주사 “82”를 “8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4”를 “43”으로,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7”을 “29”으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3”을 “202”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공업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2”를 “1”로, 전산주사 “30”을 “29”로, 전산주사보 “14”를 “13”으로, 소방공무원 계 “8”을 “7”로, 소방위 “2”를 “1”로, 경찰공무원 계 “23”을 “25”로, 경감 “3”을 “4”로, 경위 “5”를 “6”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49”를 “1,643”로, 일반직 계 “1,607”을 “1,600”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을 “9”로, 행정사무관 “117”을 “11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5”를 “54”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을 “30”으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9”를 “42”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5”를 “164”로, 전산사무관 “30”을 “29”로, 행정주사 “85”를 “8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4”를 “43”으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7”을 “29”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3”을 “202”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2”를 “1”로, 전산주사 “30”을 “29”로, 전산주사보 “14”를 “1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 1 다음에 “건축운영서기보 1”를 신설, 소방공무원 계 “8”을 “7”로, 소방위 “2”를 “1”로, 경찰공무원 계 “23”을 “25”로, 경감 “3”을 “4”로, 경위 “5”를 “6”으로 한다.

별표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3”을 각각 “251”로 하고, “공업사무관·학예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삭제, 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6”을 “5”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3”을 각각 “251”로 하고, “공업사무관·학예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삭제, 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6”을 “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57”을 각각 “75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방송통신사무관 “3”을 “2”로, 공업주사 “9”를 “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을 “1

2”로, 방송통신주사보 “16”을 “15”로, 방호서기보 “279”를 “278”로,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56”을 각각 “75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방송통신사무관 “3”을 “2”로, 공업주사 “9”를 “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4”를 “15”로, 방송통신주사보 “16”을 “15”로, 방호서기보 “279”를 “278”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을 각각 “47”로,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3”을 “2”로 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7”을 각각 “76”으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8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7”을 각각 “76”으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459”를 “455”로, 일반직 계 “450”을 “44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409”를 “405”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29”를 각각 “32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325”를 “322”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1”을 각각 “9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90”을 “89”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안전부 정원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의3]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646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1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1
별정직 계	8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비서(7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1
일반직 계	1,603
고위공무원단	3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2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	1
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9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 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 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6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4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116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전산사무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0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	42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 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 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수의사무 관 ·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	

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2
구관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5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전산사무관	29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시설사무관	7
행정주사	84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전산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3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6
행정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2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9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	

통신주사 · 공업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1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3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전산주사	29
전산주사 또는 세무주사	3
방송통신주사	3
공업주사	1
시설주사	12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19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4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공업연구소 · 시설연구소 또는 안전연구소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4	기록연구소	1
신주사보	14	통신운영서기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2	사무운영서기	1
전산주사보	13	건축운영서기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사무운영서기보	7
시설주사보	2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시설전문관 · 방재안전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3
운전주사보	1	전문경력관 가군(속기 담당)	1
행정서기	13	전문경력관 가군(서훈 담당)	1
전산서기	4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6	전문경력관 가군(시험출제담당)	1
행정서기 또는 세무서기	1	전문경력관 가군(화생방 담당)	1
행정서기 ·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전문경력관 가군(국회협력 담당)	1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비서)	1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6	전문경력관 나군(서훈 담당)	1
운전서기	2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2
행정서기보	14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	전문경력관 나군(화생방 담당)	1
운전서기보	5	전문경력관 나군(통계 담당)	1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1	소방공무원 계	7
		소방령	5
		소방경	1

소방위	1
경찰공무원 계	25
치안감	1
총경	1
총경 또는 서기관	1
경정	12
경감	4
경위	6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생략)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디지털정부정책국장 · 정부혁신국장 · 공공데이터국장 및 공공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u>공공지능데이터국장</u> -----
③ 디지털정부정책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 · 디지털기반안전과 · <u>디지털보안정책과</u> 및 국제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u>디지털보안정책과 · 지역디지털협력과</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u>	9. <u>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u>
10. <u>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시험 · 평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u>	10. <u>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재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u>

<u>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u> 11. (생략) ⑥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u><신설></u>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11. (현행과 같음) ⑥ ----- -----. 1. ~ 19. (현행과 같음) 2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 기반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⑦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 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
---	---	--	---	---

⑧ 정부혁신국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 ⑧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 ⑨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⑨ 정부혁신국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

<u>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u> 2. <u>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u> 3. <u>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u> 4. <u>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u> 5. <u>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u> 6. <u>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u> 7. <u>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u> 8. <u>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평가</u> 9. <u>정부혁신 관련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u> 10. <u>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u> 11. <u>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u> 12. <u>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u>

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u>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u> 2. <u>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u> 3. <u>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u> 4. <u>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u> 5. <u>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u> 6. <u>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u> 7. <u>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u> 8. <u>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u> 9. <u>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u> 10.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u>

⑩ <u>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u> 2. <u>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u> 3. <u>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u> 4. <u>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u> 5. <u>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u> 6. <u>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u> 7. <u>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u> 8. <u>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평가</u> 9. <u>정부혁신 관련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u> 10. <u>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u> 11. <u>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u>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2.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23.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2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

⑪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

<u>시</u>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 도의 개선 및 운영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의 운영·개선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 리	<u>원에 관한 사항</u>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 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 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 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 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 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 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 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⑫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 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 진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3.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 개선 24.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 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2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⑫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 ·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 례의 발굴·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 의 확인·점검 및 평가
---	--	---	--

<u>구축 및 운영</u>
<u>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u>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u>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u>
<u>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u>
<u>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u>
<u>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 · 개선 및 확산</u>
<u>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 · 개선 및 확산</u>
<u>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13. 문서 · 서식 · 관인 · 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u>
<u>15.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민의 정책과정</u>

<u>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u>
<u>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u>
<u>6.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 · 개선</u>
<u>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운영</u>
<u>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 · 고시</u>
<u>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u>
<u>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u>
<u>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개선</u>
<u>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u>

<u>참여에 관한 기획 · 홍보</u>
<u>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u>
<u>17.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u>
<u>18.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 · 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 · 추진</u>
<u>19.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발굴 · 관리 및 교육 · 홍보</u>
<u>20.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u>
<u>21.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u>
<u>22.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 · 보급</u>
<u>23. 온라인 · 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 · 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24.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u>

지원

25.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2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27.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28.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29.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30.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⑬ 공공데이터국에 공공데이터정책과·공공데이터관리과 및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⑬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15.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17.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18.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19.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0.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21.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
22.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24.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25.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26.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

- 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27.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링의 구성·운영 및 지원
28.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29.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 ⑭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

- ⑭ 공공지능데이터국에 지능데이터정책과·지능데이터분석과 및 공공데이터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무위원회의 운영·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

⑮ 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u>영에 관한 사항</u>	<u>(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u>
<u>10. 메타데이터의 등록·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u>
<u>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u>
	<u>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u>
	<u>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u>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u>
	<u>16.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u>
	<u>17.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u>
<u>⑯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⑯ 지능데이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u>	<u>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u>
<u>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u>	<u>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u>

<u>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u>	<u>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u>
<u>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u>	<u>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u>
<u>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u>	<u>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u>
<u>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u>	<u>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u>
<u>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u>	<u>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u>
<u>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u>	<u>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u>
	<u>11.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보</u>

⑰ 공공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 혁신과 · 공공서비스통합과 · 지역디지털협력과 및 공공지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급에 관한 사항
12.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⑰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 · 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 · 추진 및 점검

- ⑱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 · 정책의 기획 · 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 · 분석 및 연구
4.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 활용을 위한 공공 · 민간 데이터의 수집 · 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 · 관리 및 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 ⑱ 공공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 혁신과 · 공공서비스통합과 및 행정정보공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사항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4.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5.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6.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홍보
 17.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9.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①9 공공서비스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립,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

①9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3.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8.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4.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4.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5.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6.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홍보 17.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9.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⑳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	⑳ 공공서비스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정 3. <u>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4. <u>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u>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u>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u> 8. <u>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u> 9. <u>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10. <u>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u> 11. <u>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u> 12. <u>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u>	개선 3. <u>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u> 4. <u>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u> 5. <u>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u> 6. <u>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7. <u>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u> 8. <u>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u> 9. <u>전자정부서비스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u> 10. <u>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안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11. <u>공공서비스의 개인형 콘텐츠 연계 제공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 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u>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u> 14. <u>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u> 15. <u>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16. <u>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u> 17. <u>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8. <u>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9. <u>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u> ㉔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u>	㉔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u>
--	---	--	---	--

2.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절차의 수립·시행	11.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5.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16.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7.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6.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8.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7.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18.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9.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1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20.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10.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20.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2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22.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u>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23. <u>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u> 24. <u>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u> 25. <u>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u> 26. <u>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u> 27. <u>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u> 28. <u>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u> 29. <u>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u> 30. <u>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u> 31. <u>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u> 32. <u>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u>	23. <u>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u> 24. <u>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u> 25. <u>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u> 26. <u>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u> 27. <u>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u> 28. <u>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u> 2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0. <u>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u>	<u>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u> 33. <u>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u> 34. <u>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u> 35. <u>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u> 36.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 ⑥ (생략)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u>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u> 10. ~ 12. (생략) ⑧ ~ ⑱ (생략)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 (생략)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8. (현행과 같음) 9. <u>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u>----- 10. ~ 12. (현행과 같음) ⑧ ~ ⑱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안전정책국장·예방정책국장 및 <u>재난안전정보통신센터</u>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u>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u> --- ----- -----.	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안전연구원으로 보한다.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u>센터</u>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5. ----- <u>국</u> ----- -----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u>실·국·센터·관</u>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 ----- <u>실·국·관</u> ----- ----- --	⑮·⑯ (생략)	⑮·⑯ (현행과 같음)
⑤ ~ ⑪ (생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연재난실) ①·② (생략)	제19조(자연재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⑫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재난자원관리과· <u>재난경감과</u> 및 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안전연구원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 ----- ----- <u>기후재난관리과</u>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8. <u>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u>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u>국가재난안전교육원</u> ----- -----	⑦ (생략)	⑫ (현행 제7항과 같음)
⑬ <u>재난안전정보통신센터</u> 에 재난정보통신과·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안전연구	⑬ <u>재난안전정보통신국</u> ----- ----- -----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총괄과·자연재난대응과· <u>기후</u>	⑨ ----- ----- <u>재난</u>

관한 사항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26조(기록관리부) ①·② (생 략)	제26조(기록관리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기록물 분류·평가 정책의 수립·총괄</u>	5. <u>기록물 분류·평가·폐기 정책의 수립·총괄·시행</u>
<신 설>	5의2. <u>기록물평가심의회</u> 의 운영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u>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폐기</u>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u>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폐기</u>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u>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폐기</u>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⑥ -----

분장한다.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u>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폐기</u>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② (생 략)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u>기록물 평가·폐기 정책의 수립·총괄·시행</u>	<삭 제>
18. <u>기록물평가심의회</u> 의 운영	<삭 제>
19. ~ 20. (생 략)	19. ~ 20.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u>나라기록관</u>) ① <u>나라기록관</u> 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9조(<u>성남분원</u>) ① <u>성남분원장</u> ----- ----- ----- -----.
② <u>나라기록관</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u>성남분원장</u>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나라기록관</u> 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u>성남분원</u> ----- -----
제30조(<u>역사기록관</u>) ① <u>역사기록관</u> 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	제30조(<u>부산분원</u>) ① <u>부산분원장</u> ----- -----

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 로 보한다.	----- ----- -----.
② <u>역사기록관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u>부산분원장</u>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역사기록관</u> 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u>부산분원</u> ----- -----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제31조(<u>행정기록관</u>) ① <u>행정기록</u> <u>관장</u> 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 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 로 보한다.	제31조(<u>대전분원</u>) ① <u>대전분원장</u> - ----- ----- ----- -----.
② <u>행정기록관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u>대전분원장</u>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u>행정기록관</u> 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u>대전분원</u> -----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7장 <u>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u>	제7장 <u>국가재난안전교육원</u>
제41조(<u>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u> <u>원</u>) ① <u>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u> <u>원</u>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 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제41조(<u>국가재난안전교육원</u>) ① <u>국가재난안전교육원</u> ----- ----- -----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u>지방과학수사연구소</u> 등)	제43조(<u>지방과학수사연구소</u> 등)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 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u>출장소</u> 를 둔다.	① ----- ----- ----- ----- <u>분원</u> - -----.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u>출장</u> <u>소</u> 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서울 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 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 연구소장·대구과학수사연구소 장·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보건 연구관·심리연구관 또는 수석 전문관으로 보하며, <u>제주출장소</u> <u>장</u> 은 의무사무관·공업연구관 ·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 으로 보한다.	② ----- <u>분원</u> <u>에 소장 및 분원장</u> ----- ----- ----- ----- ----- ----- ----- ----- ----- ----- <u>제주분원장</u> - ----- ----- -----.
③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및 <u>출</u> <u>장소장</u> 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③ ----- <u>분</u> <u>원장</u> -----

④

분원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

같다.

[illegible]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 ⑪ (생략)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재난안전정보센터</u>: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3. <u>재난관리정책국</u>: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훈련과, 재난자원관리과, <u>재난경감과</u> 및 재난영향분석과 4. <u>자연재난대응국</u>: 재난대응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u>기후재난대응과</u>, 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 5. 6.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 -----.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재난안전정보통신국</u>: ----- ----- 3. ----- ----- ----- <u>기후재난관리과</u>----- ----- 4. ----- ----- <u>재난경감과</u>----- ----- 5. 6.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u>별표 2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 3명)</u>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u><삭제></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47</u>	<u>1,643</u>	-4
·	·	·	
·	·	·	
일반직 계	<u>1,605</u>	<u>1,600</u>	-5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8</u>	<u>9</u>	+1
·	·	·	
·	·	·	
행정사무관	<u>118</u>	<u>117</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6</u>	<u>55</u>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1</u>	<u>30</u>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9</u>	<u>42</u>	+3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8</u>	<u>167</u>	-1
·	·	·	
·	·	·	
전산사무관	<u>30</u>	<u>29</u>	-1
·	·	·	
·	·	·	
행정주사	<u>82</u>	<u>81</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44</u>	<u>43</u>	-1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27</u>	<u>29</u>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3</u>	<u>202</u>	-1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공업연구사 · 시설 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u>2</u>	<u>1</u>	-1
·	·	·	
·	·	·	
전산주사	<u>30</u>	<u>29</u>	-1
·	·	·	
·	·	·	
전산주사보	<u>14</u>	<u>13</u>	-1
·	·	·	
·	·	·	
소방공무원 계	<u>8</u>	<u>7</u>	-1
·	·	·	

·	·	·	
소방위	<u>2</u>	<u>1</u>	-1
경찰공무원 계	<u>23</u>	<u>25</u>	+2
·	·	·	
·	·	·	
경감	<u>3</u>	<u>4</u>	+1
경위	<u>5</u>	<u>6</u>	+1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9</u>	<u>1,643</u>	-6
·	·	·	
·	·	·	
일반직 계	<u>1,607</u>	<u>1,600</u>	-7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8</u>	<u>9</u>	+1
·	·	·	
·	·	·	
행정사무관	<u>117</u>	<u>116</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5</u>	<u>54</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1</u>	<u>30</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9</u>	<u>42</u>	+3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5</u>	<u>164</u>	-1
·	·	·	
·	·	·	
전산사무관	<u>30</u>	<u>29</u>	-1
·	·	·	
·	·	·	
행정주사	<u>85</u>	<u>81</u>	-4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44</u>	<u>43</u>	-1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27</u>	<u>29</u>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3</u>	<u>202</u>	-1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 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u>2</u>	<u>1</u>	-1
·	·	·	
·	·	·	
전산주사	<u>30</u>	<u>29</u>	-1
·	·	·	
·	·	·	
전산주사보	<u>14</u>	<u>13</u>	-1
·	·	·	
·	·	·	
<u>건축운영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소방공무원 계	<u>8</u>	<u>7</u>	-1
·	·	·	

·	·	·	
소방위	<u>2</u>	<u>1</u>	-1
경찰공무원 계	<u>23</u>	<u>25</u>	+2
·	·	·	
·	·	·	
경감	<u>3</u>	<u>4</u>	+1
경위	<u>5</u>	<u>6</u>	+1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3</u>	<u>251</u>	-2
일반직 계	<u>253</u>	<u>251</u>	-2
·	·	·	
·	·	·	
공업사무관·학예연구관·공업 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u>1</u>	<삭 제>	-1
·	·	·	
·	·	·	
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6</u>	<u>5</u>	-1
·	·	·	
·	·	·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3</u>	<u>251</u>	-2
일반직 계	<u>253</u>	<u>251</u>	-2
·	·	·	
·	·	·	
공업사무관·학예연구관·공업 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u>1</u>	<삭 제>	-1
·	·	·	
·	·	·	
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6</u>	<u>5</u>	-1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7</u>	<u>754</u>	-3
일반직 계	<u>757</u>	<u>754</u>	-3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u>	<u>4</u>	+1
·	·	·	
·	·	·	
방송통신사무관	<u>3</u>	<u>2</u>	-1
·	·	·	
·	·	·	
공업주사	<u>9</u>	<u>8</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u>	<u>12</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16</u>	<u>15</u>	-1
·	·	·	
·	·	·	
방호서기보	<u>279</u>	<u>278</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6</u>	<u>754</u>	-2
일반직 계	<u>756</u>	<u>754</u>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u>	<u>4</u>	+1
·	·	·	
·	·	·	
방송통신사무관	<u>3</u>	<u>2</u>	-1
·	·	·	
·	·	·	
공업주사	<u>9</u>	<u>8</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4</u>	<u>15</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16</u>	<u>15</u>	-1
·	·	·	
·	·	·	
방호서기보	<u>279</u>	<u>278</u>	-1
·	·	·	
·	·	·	

[별표 8]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u>	<u>47</u>	-1
일반직 계	<u>48</u>	<u>47</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u>3</u>	<u>2</u>	-1
·	·	·	
·	·	·	

[별표 8의3]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7</u>	<u>76</u>	-1
일반직 계	<u>77</u>	<u>76</u>	-1
·	·	·	
·	·	·	
<u>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8의4]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7</u>	<u>76</u>	-1
일반직 계	<u>77</u>	<u>76</u>	-1
·	·	·	
·	·	·	
<u>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59</u>	<u>455</u>	-4
일반직 계	<u>450</u>	<u>446</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09</u>	<u>405</u>	-4
·	·	·	
·	·	·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9</u>	<u>326</u>	-3
일반직 계	<u>329</u>	<u>326</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5</u>	<u>322</u>	-3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1</u>	<u>90</u>	-1
일반직 계	<u>91</u>	<u>90</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0</u>	<u>89</u>	-1